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5. 14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5월 14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조성미

### 가. 제안이유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일부 삭제 및 종목 명료화  
(안 별표 중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)
  - 의료기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 중 개설장소 이전 허가·신고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(그 외 변경은 수수료 없음)
  - 의료기관의 개설(변경)허가·신고에 부속의료기관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수수료 종목을 명료히 함
- 2)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와 같은 체계로 정비  
(안 별표 중 4.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)

-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,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
-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·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
- 문서·도면·사진의 열람, 복제를 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(MB) 기준으로 변경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5.1.2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 시행에 따라, 우리 구 조례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72종)중 의료기관·부속의료기관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(개설 장소 이전에 대한 수수료만 제외)하고, 부속의료기관 관련 인·허가 신고 수수료에 대한 종목명을 명료화하였고,
- 또한 2014.12.10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62종)에 대한 수수료 금액 개정 및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, 세부항목을 44종으로 통합하였고,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, 문서·도면·사진의 열람, 복제는 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(MB)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 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2호에서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(보건복지부령 제 282호, 2015.1.2) 이 개정되어
  -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72종)중 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 등 개설 장소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변경허가(신고) 수수료 삭제하고,
  -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(개설신고) 및 변경허가(변경 신고)에 관한 수수료 사항을 의료기관 개설(변경)허가, 개설(변경)신고 종목 명칭 사이에 ‘부속 의료기관’ 을 삽입하여 수수료 종목을 명료화함.
 가목(28) : “의료기관 개설허가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”로

가목(29) : “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 
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(장소이전)”로 변경하고

나목(22) : “의료기관 개설신고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”로

나목(23) : “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 
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장소이전)”로 변경함.

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4호에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2014.12.10) 제7조의 공개대상 및 수수료 금액을

-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하고
-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
- 문서·도면·사진의 열람, 복제는 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(MB)기준으로 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8조 및 제32조 개정  
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3조 관련 [별표]의 제2호에서 수수료 일부를 삭제  
하고 수수료 종목을 명료화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  
인을 없애고자 하였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  
에 따라 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4호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 금액  
개정 및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  
정리 하여 수수료를 종목으로 구분하고, 열람 및 출력물 단위수량별로 우리  
구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  
년 조례 제정이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도 수수료 변동사항이 거의 없  
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이번 조례 개정은  
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